



환경과 무역

나 성 린(초청연구위원, 한림대 교수)

김 승 진(초청연구위원, 외대 교수)

최근 무역과 환경 간의 상관관계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환경규제와 선진제국의 국내환경규제가 경제 및 기술력이 상이한 국가들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제무역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의 생산이나 소비가 초래하는 환경비용이 그 상품의 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국제환경협약)과 선진제국의 국내적인 노력(국내환경규제)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稿는 무역과 환경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우리의 무역패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무역 갈등에 대한 향후 국제적 해결노력을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및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은 상품교역을 통해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지만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무역제한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環境質을 저하시켜 경제적 후생의 감소를 초래한다. 반면 환경보호 명목의 무역제한을 용인하는 환경무역(environmental trade)은 환경질의 개선으로 경제적 후생은 증진되지만 무역감소로 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가져 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환경우호적이 아닌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자유무역은 그러한 상품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그 생산에 수반하는 환경오염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연자원의 무역 증가는 저개발 자원보유국에 대해 자원의 과다한 채굴을 강요함으로써 삼림자원의 황폐와 토양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추구가 환경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지는 않고, 환경우호적인 생산기술의 국제적 전파를 가속화시키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경오염비용의 내부화와 무역의 제한**이다. 환경비용의 내부화는 환경비용이 완전히 그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한 다음 다자간의 협정에 의해 공동 관리되는 「환경기금」을 설립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무역의 제한은 국제환경협정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 및 수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책은 선진제국의 국내환경정책과 국제환경정책으로 나누어진다. 선진제국의 국내환경정책은 최종생산물의 성질 또는 그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규제와 생산과정에 대한 규제로 나뉜다. 최종생산물의 성질,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규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채택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생산과정에 대한 규제는 외국의 경쟁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나 집행에 직면할 때 국내기업들이 국제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으로 선진국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둘째로, 국제환경정책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방간 또는 다자간에 체결되는 국제환경협약들(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한 규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이슈는 누가 오염감소비용을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제협약은 오염자부담원칙(PPP)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협약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어떠한 국가도 그 협약이 자국에 손해를 가져올 경우 조인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과 오존층 파괴와 같이 모든 국가가 오염자일 경우 문제는 오염감소비용을 협약당사국들 간에 어떻게 부담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비용부담 원칙은 모든 당사국들이 같은 비율로 오염을 감소시키는 「동등감소」와 오염감소의 한계비용의 차이에 따라 「차별감소」를 인정하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감소비용을 가진 국가(선진국)에게 많은 오염輕減을, 높은 한계감소비용을 가진 국가(개도국)에게 적은 오염輕減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등감소」는 형평성은 지키나 세계전체적 자원배분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차별감소」는 효율적이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제협약은 「동등감소」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체결된 CFC 감소조약인 몬트리올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감소」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협약체결시 「차별감소」원칙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환경-무역관계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국내환경규제와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 및 수출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이것은 고용감소와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환경기술의 개발 및 공해절약적 상품의 개발노력 여하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품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자료의 제약과 여러가지 비현실적 가정 등으로 그 추정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환경-통상 전문가들에게 정보 가치가 있는 두가지 연구결과를 살펴 보기로 한다. 미국의 DRI(1993)는 선진국 특히 OECD제국의 탄소세 도입을 통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국내적 규제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 바, 미국이 탄소 1톤당 100달러 그리고 EC가 석유 1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1994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의 대OECD 수출은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연평균 0.5%, 즉 7억 9천만 달러 (1992년 환율기준)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연구원(1993)은 선진국들이 국가간 공해방지연관비용의 차이를 관세화할 경우, 이러한 환경상계관세가 한국의 對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대일 수출, 대EC 수출은 1991년 기준으로 각각 2.0%, 4.7%, 1.8%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두 연구결과는 물론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당히 바뀔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교역상대국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규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선진제국의 환경규제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 직접적규제도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기술수준이 규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은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도 그것이 무역제한조치를 포함하고 있을 때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다. 또한 직접적인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더라도 환경오염물질의 국내생산에 대해 제약을 가할 경우 그러한 물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상품의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환경-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전망

현재 많은 나라들이 환경보호를 구실로 무역제한조치를 남용함에 따라 환경-무역 갈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의 마련과 그것을 강제 집행할 국제기구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다. 1995년 이후 GATT체제가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전환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협상이 예상되는데, 이 협상의 기본목표는 UR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의 지양에 있을 것이므로 각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보호무역조치들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한 보호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정립일 것이다. 그러나 WTO체제의 다자간협상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환경-무역 갈등은 각국의 국내법의 일방적인 적용이나 쌍무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당분간 국내적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비관세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고 개도국들은 피해당사자가 될 우려가 큰 것이다. 각국의 일방적 무역규제조치 이외에도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협약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지구온실화현상 예방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구체화되어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응방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인 입장에 처한 우리는 앞으로의 국제 무역-환경협상에서 우리의 환경-무역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기본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외국의 압력이 없더라도 환경을 스스로 개선함과 동시에 무역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두가지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경오염은 위대한 것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위험수준 이하로 경감하는 것을 환경정책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둘째, 무역장벽으로서의 무역제한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에 대한 순수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조치는 용인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한조치는 무차별적이어야 하고 다자간 협상에 의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직접규제조치(무역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조치(관세, 국제환경세)의 활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규제기준은 어느 한 나라에 강제될 수 없으며 개별국가 처한 경제적·기술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국내적 환경규제기준을 근거로 수입을 제한할 경우 남용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공인되

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은 국제적 및 국내적 전략으로 구성될 수 있다. 국제적 전략은 첫째, 다자간 무역-환경협상의 활용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지식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협상 참여시 우리의 기본입장은 「자유무역」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로, 선진국의 환경무역장벽의 극복방안으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환경관련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당장 시급한 빈곤, 실업 및 경제개발 문제 때문에 재정적·기술적으로 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개도국에 대해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개도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여야 한다.

셋째로, 자원보유국의 환경보전전략 극복방안으로, 자원보유국의 자원가격에 대한 환경비용의 내부화 및 자원채굴의 감소가 우리 수출산업의 원자재 공급에 미칠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환경비용의 내부화가 개도국에 불공평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제협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전략은 첫째, 환경-통상 관련 조직의 필요성으로, 국제협상에 참가하게 될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통상 및 환경관련 모든 민간기구들을 총괄하는 정부의 조정기구와 이 조정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정책 수립의 필요성으로, 국내환경정책은 기존의 직접규제수단에서 벗어나 비용효율적이고,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세, 배출부담금 및 거래가능 배출권과 같은 시장경제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절약형/청정에너지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를 청정에너지(원자력, 수력, 潮力, 태양열)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사용기기를 개발하도록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환경관련기술 R & D 투자 및 환경산업 육성의 필요성으로, 선진국의 환경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방법은 선진국의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R & D 투자 강화와 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환경산업은 환경기술의 개발에도 절대적이지만 수출산업으로의 발전과 성장주도산업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필자 약력

나성린 : 서울대학교 철학사(1976)
영국 Oxford대학교 경제학박사(1986)
영국 Essex대학교 교수(1988-89)
한림경제연구소 소장(1991-93)
한림대학교 교수(1989-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1993-)

김승진 : 서울대학교 경제학사(1970)
미국 Ohio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1981)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1981-84)
APDC Coordinator(1990-1993)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1984-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1993-)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